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명진흥법」에 따라 선정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특허료 등의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무상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이전하거나 그에 대한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허락한 경우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여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출원의 출원서 및 요약서의 사본을 전자문서로 추가 제출하는 방식이 「특허협력조약 규칙」에서 폐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제출원료 감면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9. 12. ~ 9.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전단 중 “2016년 2월 29일”을 “2018년 2월 28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지식재산포인트의 부여·사용 및 환수) ① 특허청장은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이전한 경우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으려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식재산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제5조에 따른 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는 제외하며, 국제출원수수료의 경우 제10

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송달료 및 조사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식재산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거짓으로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은 경우 등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지식재산포인트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특허료 · 등록료 · 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 면) ① · ② (생 략)	제7조(특허료 · 등록료 · 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 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 로 선정된 소기업, 중기업 및 중 견기업에 대하여 <u>2016년 2월 29</u> <u>일까지는 4년분부터 6년분까지</u> <u>의 특허료 · 실용신안등록료 및</u> <u>디자인등록료를 각각 100분의</u> <u>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u> <u>100원 미만의 금액은 감면액에</u> <u>포함하지 아니한다.</u>	③ ----- ----- ----- ----- <u>2018년 2월 28</u> <u>일</u> ----- ----- ----- ----- -----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7조의2(지식재산포인트의 부여</u> <u>· 사용 및 환수) ① 특허청장은</u> <u>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u> <u>디자인권자가 소기업, 중기업</u> <u>또는 중견기업에 무상으로 다음</u>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행위를 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u> <u>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u> <u>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정하여</u>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이전한 경우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으려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제5조에 따른 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는 제외하며, 국제출원수수료의 경우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송달료 및 조사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식재산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거짓으로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은 경우 등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제10조(「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①・② (생략) ③국제출원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특허법 시행규칙」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서 및 요약서의 사본을 전자문서로 추가제출하는 자에 대하여 「특허협력조약 규칙」 제96조 수수료표 item3 (a)의 규정에 따라 100 스위스프랑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생략) ④ ~ ⑧ (생략)	<u>해당하면 해당 지식재산포인트를 환수할 수 있다.</u> 제10조(「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삭 제></u> 2.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	---